

『2026년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활성화(공정개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활성화(공정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06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

* 첨단분석시스템(바이오파운드리) : 인공지능(AL), 로봇 등을 합성생물학 연구에 적용하여 실험 전 과정을 고속화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및 디지털 시스템

1 모집개요

□ 지원목적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바이오파운드리) 기술고도화 및 공정개발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증대
 -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내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지원실 구축
- 국내 동물용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기업의 첨단분석시스템 전·후방 공정 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

□ 지원대상

- 국내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파운드리 기술보유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
- 바이오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워크플로우 개발기술 보유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 내용	지원수	사업비
공정개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지원실’ 내 바이오파운드리 공동 운영·활용을 위한 분석/응용 프로토콜 및 워크플로우 개발 (활용 장비 목록 별첨1. 장비리스트 참조) ※ 위치: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3층 공동실험실	2개소 내외	최대 75백만원/ 개소

※ 공정개발을 위한 장비 활용 계획 및 정량지표 제시

(사업 종료 후 공정개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개소당 최대 75백만원 이내 지원 예정이며, 사업신청 현황 및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라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금 및 지원수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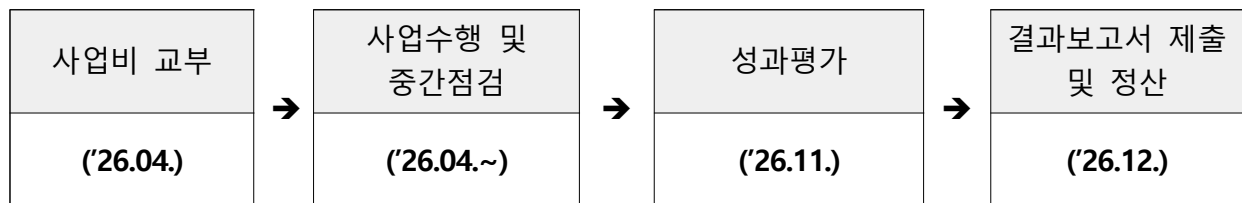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지방보조금+민간부담금)의 25% 이상 민간부담 필수(VAT 별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약 8개월)

○ 지원방식 : 선정평가에 따른 사업비 지원(직접지원)

– 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입금 필수

○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04.10.(금), 16시까지
※ 본 공고 일정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 및 연장될 수 있으며, 재공고 없음
- 신청방법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ptp.or.kr/)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p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온라인신청

① 기업 회원가입(필수) → ② 기업정보 및 신청 정보입력 → ③ 사업 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첨부파일 업로드) → ④ 입력 내용 확인 후 신청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 전산 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하며, 신청 마감후 접수된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문의처 :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
(Tel.: 054-262-4222 / E-mail : hjh@ptp.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
	2.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양식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 3]
	4. 신청기관 자가진단표	[양식 4]
	5. 사업자등록증 1부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7. 기업재무제표(최근3개년) ※ 2025년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신청기관이 기업일 경우 제출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3개년)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최근3개년)	
	10. 사실증명원(총사업자 등록내역)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폐업사실증명원)	

	11.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1부	
선택	12. 가점 관련 증빙자료 ※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점사항' 참고	해당 시 제출
	13.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자료 ※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특허 수상, 수출실적 증빙서류 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 신청제한

- 기업이 부도, 자본전액 잠식, 휴·폐업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동일 과제를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가점 사항

-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서류평가지 최대 5점 부여

항목	가점 조건	증빙 서류	가점	비고
투자 유치	'23~'25년 5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	투자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 등)	1	-
민간 부담	총사업비 기준 50% 이상 민간부담 시	사업계획서	2	
소재지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이상)을 보유	사업자등록증 등 도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2	

4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서류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서류검토) 제출서류 바탕으로 신청자격 검토(서류 누락, 제외 등 적합성)
 - ※ 필수서류 누락 등 부적합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발표평가)

단계	내용	일자(예정)	평가자
1단계	서류평가	4월 中	외부전문가 5인 이상
2단계	발표평가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며, 서류 평가 30%, 발표 평가 70%의 비중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및 평가를 실시
-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의 구두 발표로 진행 (발표 20분, 질의 10분)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공지 예정(PPT형식, 원본파일 1부/사본 7부 제출)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라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

-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계산
- 동점 발생 시, 발표평가 성적 우수기업을 우선순위로 하며,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 시, 기술성 및 사업성 → 사업계획 → 성장가능성 → 수행역량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 추진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수혜기업 모집공고 시행 및 사업홍보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접수	포항TP	3~4월
↓			
수혜기업 선정평가	- 신청서류 기반,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요건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서류(비대면) 및 발표평가(대면) -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 종합평가 - 수혜기업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	포항TP (평가위원회)	4월 中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평가결과에 따른 선정기업 대상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포항TP ↔ 수혜기업	4월 中
↓			
지원과제 수행 및 점검	- 수혜기업 : 수행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 포항TP : 수혜기업 모니터링 및 점검	수혜기업	4월~8월
↓			
지원 과제 결과 평가/정산	- 수혜기업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 성과평가(발표평가) 및 결과/정산보고서제출	포항TP 수혜기업	11월~ 12월
↓			
사후관리	- 수혜기업 고용 및 매출 등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포항TP ↔ 수혜기업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불인정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기준

- 서면평가 기준(30%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출서류 적정성 (10)	1. 제출서류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참고자료(별첨)의 적합성 등	10
사업계획 적정성 (60)	1. 사업추진 필요성 -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10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체성(10) - 성과목표(정량지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30)	40
	3. 예산 계획의 합리성 - 예산의 세부내역 구성 및 산출 근거의 타당성	10
정책 부합성 (10)	1. 국내외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 정책 부합성,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5
	2. 해당 분야 산업 및 학술적 기여도 - 기술적,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5
성장 가능성 (20)	1. 기업 성장 가능성 - 매출 및 투자,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기업 성장 가능성 2. 기술 및 제품 고도화 가능성 - 연구개발 성과(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 고도화 가능성	20
합 계		100

* 성과목표 : 분석/운영 프로토콜, 워크플로우 개발에 대한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구체적 제시

○ 발표평가 기준(70%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역량 및 전문성 (20)	1. 관련 분야 기술 및 전문인력 보유 등 사업추진 역량 - 내부 전문 인력 확보 여부 및 수준 - 인력 구성의 적절성, 사업화 성공 경험(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10
	2. 보유 기술의 우수성, 유사사업 수행실적, 선행연구 등	10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50)	1.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	10
	2.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등 - 성과목표(정량지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30
	3.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예산 세부내역의 적절성 및 자부담 자금조달 계획 등	10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15)	1. 개발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 기술의 이해도,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목표기술 및 제품개발의 적용 가능성,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기술개발 또는 구현의 가능성 등, 기술의 확장성 등	15
	2. 개발제품의 차별성 및 상용화 가능성 - 개발제품에 대한 시장수요 및 예상 시장 점유율(시장규모)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등	
사업화 전략 (15)	1. 사업화 전략 -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수출 등 사업화 전략 - 지식재산권(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확보 및 상용화 전략 2. 기술고도화 전략 :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 3. 국제협력 전략 : 공동기술개발, 인력교류, 판로개척 등	15
합 계		100

○ 선정 및 협약 체결

-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정개발 분야 지원기관을 선정하며, 종합평점 산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기관 선정
- (통지) 사업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연락처로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별도 공지

※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지방보조금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 필수

5 선정기관 의무

- 선정기관은 협약 이후,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 하여야하고, 사업비 교부시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선정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관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관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을 받게 됩니다.
- ②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관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 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관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관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 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 보증 기호는 ‘협약지원금’,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종료 + 3개월
 ※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업비 교부 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일 이후 사업비 ‘사전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 및 승인 후 집행해야 함
- 사업비 통장은 기관명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함. 또한,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관에서 부담함
- 사업비 예산 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포항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변경 시, **비목 간 변경은 ‘승인성’**, **비목 내 세목 변경은 ‘통보성’** 으로 진행하며, 승인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포항테크노파크의 승인하에 집행 가능함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변경은 승인성, 통보성 모두 공문으로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 기간, 참여율 변경도 동일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 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별도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함

별첨1 첨단분석시스템 세부 장비

구분	구성 장비	주요기능
후보유전자 발굴 자동화시스템	1. 중앙통제시스템	스케줄링 제어 및 미세 조정
	2. 5관절 로봇암 시스템	실험장비 간 플레이트, 팁박스 등 운송
	3. 8채널 피펫터	개별적인 8채널로 자동 액체 분주
	4. 96 멀티헤드 피펫터	96멀티헤드 피펫터로 자동 액체 분주
	5. 전자동 콜로니 수집 시스템	자동 콜로니 picking 가능
	6. 전자동 상온 저장고	플레이트, 팁박스 등 보관 및 관리
	7. 전자동 저온 배양기	4~50℃ 세포 배양 및 시약 보관
	8. 전자동 고온 진탕배양기	10~50℃ 교반형 세포 배양 및 시약 보관
	9. 전자동 플레이트 밀봉기	표준 플레이트 밀봉
	10. 전자동 플레이트 밀봉제거기	표준 플레이트 밀봉 제거
	11. 자동 모세관 전기영동 시스템	유전자 크기 분석
	12. 전자동 핵산증폭기	조건별 자동 DNA 증폭
항체의약품 발굴 자동화시스템	1. 중앙통제시스템	스케줄링 제어 및 미세 조정
	2. 5관절 로봇암 시스템	실험장비 간 플레이트, 팁박스 등 운송
	3. 플레이트 대용량 저장소	플레이트, 팁박스 등 보관 및 관리
	4. 자동화 플레이트 인큐베이터	4~50℃ 세포 배양 및 시약 보관
	5. 자동화 교반 플레이트 인큐베이터	10~50℃ 교반형 세포 배양 및 시약 보관
	6. 고효율 자동화 액체 처리	8채널/96채널로 자동 액체 분주
	7. 전자동 콜로니 수집 시스템	시간당 3,000개 콜로니 picking 가능
	8. 멀티 채널 시약 분주기	5~2,500uL 내 분주량으로 플레이트 시약 분주
	9. 마이크로 플레이트 세척기	마그네틱비드 기반 플레이트 자동 세척

구분	구성 장비	주요기능
	10.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	흡광, 형광, 발광 측정
	11. 전자동 플레이트 밀봉기	표준 플레이트 밀봉
	12. 전자동 플레이트 밀봉제거기	표준 플레이트 밀봉 제거
	13. 자동 핵산 추출 장치	고순도 자동 핵산 추출
	14. 자동화 플레이트 원심분리기	플레이트 내 시료 원심분리